

I . 재정운영 방향

1.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
2. 2023년 재정운영 방향
3. 2023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도정의 비전과 추진전략

도정비전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New

새로운 강원도

Free

자유로운 강원도

Great

위대한 강원도

도정목표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2023년도 도정방향 및 추진전략

1 2023년 도정방향

□ 도민 중심의 지역주도형 강원특별자치도를 실현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도민 이익 중심의 특례 법제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규제혁파 실시
-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정책 중점 추진
- 반도체·바이오·에너지·데이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도정의 역량 집중

2 핵심목표와 추진전략

도정 핵심목표 ⇒ 특별자치도 성공 안착 + 미래산업 육성 + 도민생활 안정

핵심 추진전략 ⇒ 5대 분야 20개 과제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 실현

- ▶ 강원특별자치도 기반 완성
- ▶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 ▶ 도민 중심의 지방행정 운영

미래 첨단산업
중점 육성

- ▶ 첨단기술 중심의 신산업 육성
- ▶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 ▶ 미래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반 강화
- ▶ 데이터 산업 수도 육성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 ▶ 글로벌 관광지대 육성
- ▶ 강원 문화·체육 저변 확대
- ▶ 농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 ▶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 ▶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 강화
- ▶ 전략적 투자유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 강원형 일자리 확대
- ▶ 균형발전 촉진 SOC 확충
- ▶ 접경·폐광지역 경제기반 조성

재난·재해 대응 및
복지안전망 강화

- ▶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
- ▶ 돌봄과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
- ▶ 도민의 건강한 삶 여건 조성

2. 2023년 재정운영 방향

재정여건

- **세입전망**은 2023년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인해 지방세 등 지방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이전수입 개선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증가가 예상되나, 물가 상승세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큰 폭의 세입증가 여건은 불확실 전망
- **세출전망**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도정 공약사업 추진과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미래산업 육성, 인구변화 대응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 지속 증가 전망

중점 편성방향

- (경제안정)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4고(高)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 서민경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 (건전재정) 인플레이션 위기 대응 위한 긴축재정, 세출 구조조정 및 채무감축 등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
- (필수사업 예산 집중 편성)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취약계층 지원, 신성장·미래 산업 투자 등 민선8기 공약사업 집중 투자

분야별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4
-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정비 17

②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11
- 반도체 교육기반 구축 전략 수립 2
-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 40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24
-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47
-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4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34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17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32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316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33
-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26

③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육아기본수당 지원 1,309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72
- 첫 만남 이용권 109
- 참전명예수당 지원 70
- 보훈명예수당 지원 30
- 보훈단체 공익활동 지원 2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3
- 기초 연금 7,896
- 생계급여 지원 2,443
-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30

④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96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18
- 긴급창업 및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15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
-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13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60
-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7
-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48
- 해운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58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지원 15

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 11
-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12
- 청년·여성 구직활동 지원 25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4
- 장애인 일자리 지원 83
-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1,110

⑥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

- 반값 농자재 지원 132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7
- 어업용 면세유 지원 21
- 숲길 조성 관리 14
-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57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71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3
- 농업인 수당 지원 346
-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5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6
- 산불예방 헬기임차 75
- 생태하천 복원 사업 137

⑦ 강원관광·문화체육 경쟁력 강화

- 목조문화재 화재감사·진화시스템 4
- 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39
-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105
- 강원FC 운영 지원 100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등 30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67
- 문화도시 조성 58
- 호수관광도시벨트 조성 24
- 도지사기(배) 체육대회 6
-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101

⑧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

- 재해위험지역 정비 1,088
- 자치경찰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74
- 국가예방접종 실시 157
- 재난·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00

⑨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16
-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1,151
- 지자체 ITS 구축 지원 213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337

⑩ 재정혁신 및 기타 사업

- 실질채무 상환 558
-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600

3. 2023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기준경비 관련

① 임기제 공무원(기초단체 6급) 대민활동비 개선

- 기초단체 임기제공무원(6급)이 5급(상당) 직급보조비를 받더라도 대민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권고('21년 인권위)
-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5급 직급보조비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 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 설>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 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이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대민활동비 지급가능

②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개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 반영하고,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1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 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u> 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u>2023년</u>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u>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u> - <u>2022년 기준액(138만원) × (1 +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u>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 <u>22년</u>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 <u>22년</u> 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 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2 세입 · 세출 예산과목

3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 신설 필요
→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3종의 통계목으로 세분화

현 행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물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사업) ※ 단,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관련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광역)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시도비보조사업인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등이 아닌 301-03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은 301-02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301-01에 편성

④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 설정 개선

- 재난 발생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

→ 현행 민간인 → 개선 민간인(단체), 현행 보상금 → 개선 보상금 및 물품

현행		개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성목	설정	편성목	설정
300 경상이전		300 경상이전	
302 아주 및 재해 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 아주 및 재해 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재해 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유류대 등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재해 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의 활동수당 및 상해 치료비, 식비, 동원장비유류대 등

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 보험료 예산과 실지출 금액의 차이로 잦은 예산변경 처리 등 업무부담

→ 보험료 항목을 보험금 등 부담금(304-04)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금 항목 추가

현행		개정	
304	01. 연금부담금	304	01. 연금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2. (삭제)
	02. 국민건강보험금		02. 국민건강보험금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포함		* (삭제)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보험료부담금 등		04. <u>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 료부담금 등</u>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u>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u> 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6 공사관련 예산통계목(시설비, 자산취득비) 개선

- 그간 예산 통계목에 따라 발주형태(물품, 공사 등)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편성단계부터 예산과목의 정확한 설정 필요

→ 시설비목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 추가기재 및 편성시 유의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401	01. 시설비 4. 시설비 (중략) <신설>	401	01. 시설비 4. 시설비 (중략) <u>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u>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략) <신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략) <u>※ 상기 적용대상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시설비(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u>

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단서 삭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8항*과 충돌 가능한 문구삭제

*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중략)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 해석 → 자치단체는 학교 회계로 직접 보조가능)

현 행		개 정	
308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6. 생략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08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6. 생략 <u>※ 삭제</u>

8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과목 신설

○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 '22년 적용

→ 세입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장에 소멸대응기금 항(321-01) 신설

현 행				개 정			
과목구분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u>300 지방교부세</u>				<u>300 지방교부세 등</u>			
	31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u>(신설)</u>				<u>320 소멸대응기금</u>	
		<u>(신설)</u>				<u>321 소멸대응기금</u>	
			<u>(신설)</u>				<u>321-01 소멸대응기금</u>

9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 그간 수입성질이 다름에도 범칙금을 과징금 및 과태료 항으로 분류

→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므로 230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내에 범칙금 항(237) 신설

○ 예산규모(순계) 산출을 위해 광역 세입과목인 시도비보조 반환수입(223-01)과 기초 세출과목인 시도비보조금반환금(802-02)과 대응

- 광역 세입과목인 시도비보조 반환수입에 위탁금 반환비까지 함께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예산규모 산출시 오류 발생

→ 시도비보조 반환 수입항에서 위탁비 반환금 분리(223-03)

현 행				개 정			
과목구분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1	과징금			23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2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3	변상금
		234	과태료			234	과태료
		235	환수금			235	환수금
		236	부담금			236	부담금
		(신설)				237	범칙금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신설				223-03 위탁비반환수입

3 기타 보완사항

10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외대상 추가

- 국가는 예산성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만이 성인지예산성 작성대상이나 지자체는 재정집행을 수반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전체가 작성 대상이라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외 대상에 성인지 관련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결정한 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신 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u>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u>

11 세출사업 자원표시 구분에 지방비 추가부담 자원 추가

- 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매칭자원 중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이 분리가 되지 않아 각각의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

→ 세출사업 자원표시 구분에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을 분리

현 행	개 정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생략> ☐ 보조자원 포함 사업과 자체자원 사업을 구분 <생략> ○ 보조자원 포함사업에 _____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_____ (신설)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현행과 같음> ☐ 보조자원 포함 사업과 자체자원 사업을 구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 지방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지방비 부담분은 '추가자체자원'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u>

12 예산통계(순계) 자동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

- 그간 예산규모(순계)를 산출을 위해 수작업을 하였으나, '23년 예산 편성부터 시범운영하는 차세대시스템에 자동산출 기능도입

→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시 상대회계 등록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생략> ③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 2.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생략> ③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u>※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시 상대회계 반드시 등록</u>

13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관련 유의사항 반영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에 따라 e호조 정보관리 기능이 마련되었으나 예산 편성시 재난예산 정보입력 누락사례 빈번
→ 재난 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u>□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u> ○ <u>예산 편성 전, 재난안전법 제10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 <u>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 <u>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편성현황 분석을 위해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u>

14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별표3)지방보조금 내용 보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일부 미반영
→ 별표3) '지방보조금'에 관련 제·개정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u>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u> ※ <신 설> ③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현행과 같음> ①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② 적용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종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등 ③ <현행과 같음>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의 예산편성 원칙

- <신 설>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 설>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신 설>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 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308-08)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현행과 같음>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u>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u>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u>사업 또는 행사</u>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u>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u>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채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현행과 같음>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u>사무 또는 사업</u>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현행과 같음>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현행과 같음>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적용기준 : <u>일반+기타특별회계</u> ※ <현행과 같음> -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현행과 같음>
---	---

1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 지방재정 전 과정의 데이터기반 예산운용 필요

→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에 매핑하여 연계·관리한다는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중략) ▶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중략) ▶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 데이터기반 예산운용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데이터이용단위)에 매핑하여 연계·관리(예시 : 지방보조금 등)